

성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동구 결산검사위원회

목 차

I. 결 산 검 사 개 요	1
II. 결 산 검 사 의 견 서	2
III. 결 산 검 사 결 과	3
IV. 개 선 및 권 고 사 항	23

I. 결산검사 개요

1.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 「지방회계법」 제14조 ~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제15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검사기간: 2023. 3. 20. ~ 4. 18. [30일간]

3. 검사대상: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

4. 검사위원 및 검사분야

- 대표위원 정 교 진: 총괄
- 검사위원 유 재 성: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
- 검사위원 김 예 희: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등

5. 검사사항

-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관한 관계서류의 계수 정확여부
- 재정운영의 적법성, 합목적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

II. 결산검사 의견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귀하

본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이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본 위원들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검토 절차를 적용하였습니다.

본 위원들의 검사 결과 성동구가 작성, 제출한 2022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별첨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성동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4.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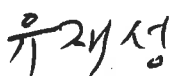
결산검사 대표위원
성동구의회 의원

정 교

진 

결 산 검 사 위 원
공 인 회 계 사

유 재

성 

결 산 검 사 위 원
공 인 회 계 사

김 예

희 

Ⅲ . 결산검사 결과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가. 총괄

(단위: 원)

구분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예산현액	결산액	비율	예산현액	결산액	비율	
합계	899,754,990,770	937,330,029,224	104%	899,754,990,770	772,493,770,650	86%	164,836,258,574
일반회계	877,976,954,270	914,307,658,324	104%	877,976,954,270	754,000,090,770	86%	160,307,567,554
특별회계	21,778,036,500	23,022,370,900	106%	21,778,036,500	18,493,679,880	85%	4,528,691,020

-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64,836,259천 원으로,
- 명시이월 22,007,557천 원, 사고이월 24,972,838천 원,
보조금실제반납금 20,178,011천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7,677,853천 원입니다.

2. 세입의 결산

가. 총괄

(단위: 원)

구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계	899,754,990,770	976,472,223,194	937,330,029,224	2,073,887,650	37,068,306,320	104.2	96.0
일반회계	877,976,954,270	943,405,105,294	914,307,658,324	1,300,665,780	27,796,781,190	104.1	96.9
특별회계	21,778,036,500	33,067,117,900	23,022,370,900	773,221,870	9,271,525,130	105.7	69.6

- 세입예산현액 899,754,991천 원에 대한 수납액은 937,330,029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2%이며
- 징수결정액 976,472,223천 원에 대한 수납액 비율은 96.0%입니다.
- 각 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일반회계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원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율(%)	
						㉢/㉠	㉤/㉡
합 계	877,976,954,270	943,405,105,294	914,307,658,324	1,300,665,780	27,796,781,190	104.1	96.9
지방세수입	152,248,084,000	166,024,948,520	164,967,165,570	69,781,830	988,001,120	108.4	99.4
세 외 수 입	84,006,824,000	113,095,911,570	85,071,348,570	1,230,883,950	26,793,679,050	101.3	75.2
지방교부세	26,715,000,000	30,501,087,900	30,501,087,900	0	0	114.2	100
조정교부금등	132,871,074,000	172,417,881,640	172,417,881,640	0	0	129.8	100
보 조 금	348,335,062,000	334,943,654,590	334,943,654,590	0	0	96.2	1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133,800,910,270	126,421,621,074	126,406,520,054	0	15,101,020	94.5	100

- 세입예산현액 877,976,954천 원에 대한 수납액은 914,307,658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4.1%이고, 징수결정액 943,405,105천 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6.9%입니다.

-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08.4%, 99.4%로서 전년도(111.5%, 99.5%)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3.1% 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0.1% 감소하였습니다.

-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01.3%, 75.2%로서 전년도(95.5%, 67.7%)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5.8%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 7.5% 증가하였습니다.

다.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비 율(%)	
						㉢/㉠	㉤/㉡
합 계	21,778,036,500	33,067,117,900	23,022,370,900	773,221,870	9,271,525,130	105.7	69.6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8,610,000	667,326,060	646,489,010	0	20,837,050	104.5	96.9
주차장 특별회계	21,159,426,500	32,399,791,840	22,375,881,890	773,221,870	9,250,688,080	105.7	69.1

- 세입예산현액 21,778,037천 원과 징수결정액 33,067,118천 원에 대한 수납액은 23,022,371천 원으로,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각각 105.7%와 69.6%로 전년도(102.5%, 80.1%)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3.2%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 10.5% 감소하였습니다.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618,610천 원과 징수결정액 667,326천 원에 대한 수납액은 646,489천 원으로,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04.5%와 96.9%로 전년도(117.6%, 100%)에 비하여 예산현액 대비 13.1%, 징수결정액 대비 3.1% 각각 감소하였고,
-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 21,159,427천 원과 징수결정액 32,399,792천 원에 대한 수납액은 22,375,882천 원으로, 예산현액 및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각각 105.7%와 69.1%로 전년도(102.3%, 79.9%)에 비하여 예산현액 대비 3.4% 증가, 징수결정액 대비 10.8% 감소하였습니다.

3. 세출의 결산

가. 총괄

(단위: 원)

회계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출액 ㉡
합계	838,678,031,000	61,076,959,770	899,754,990,770	772,493,770,650
일반회계	821,716,836,000	56,260,118,270	877,976,954,270	754,000,090,770
특별회계	16,961,195,000	4,816,841,500	21,778,036,500	18,493,679,880

회계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	집행잔액㉣=㉠-㉡-㉢			
		계	보조금 반납금	예산절감 등	비율 (㉣/㉠)
합계	46,980,395,120	80,280,825,000	25,325,761,640	54,955,063,360	8.9%
일반회계	46,980,395,120	76,996,468,380	25,275,372,405	51,721,095,975	8.8%
특별회계	0	3,284,356,620	50,389,235	3,233,967,385	15.1%

- 세출예산액 838,678,031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61,076,960천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899,754,991천 원이고 지출액은 772,493,771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비율은 85.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46,980,395천 원을 포함한 819,474,166천 원에 대한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91.1%로 집행잔액 80,280,825천 원에 대한 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9%입니다.

- 각 회계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일반회계

2022회계연도 기능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회 계 구 분	예 산 액	예산성립후 증 감 액	예산현액 ㉑	지 출 액 ㉒
합 계	821,716,836,000	56,260,118,270	877,976,954,270	754,000,090,770
일 반 공 공 행 정	63,227,762,000	14,957,815,220	78,185,577,220	69,474,420,580
공공질서및안전	3,224,177,000	364,120,000	3,588,297,000	2,983,666,200
교 육	16,936,883,000	72,200,000	17,009,083,000	16,396,489,160
문 화 및 관 광	35,524,521,000	16,036,193,620	51,560,714,620	48,567,719,430
환 경	36,498,225,000	3,574,580,880	40,072,805,880	34,284,994,360
사 회 복 지	371,018,546,000	15,326,132,970	386,344,678,970	352,853,914,370
보 건	31,614,344,000	2,022,021,430	33,636,365,430	28,066,075,900
농 립 해 양 수 산	1,669,834,000	0	1,669,834,000	1,020,247,780
산업·중소기업 및 에 너 지	34,927,888,000	8,350,503,000	43,278,391,000	34,057,232,520
교 통 및 물 류	28,459,388,000	7,578,243,000	36,037,631,000	16,039,353,640
국토 및 지역개발	28,575,254,000	9,445,351,150	38,020,605,150	25,289,988,500
예 비 비	33,157,359,000	△21,504,143,000	11,653,216,000	0
기 타	136,882,655,000	37,100,000	136,919,755,000	124,965,988,330

(단위: 원)

회 계 구 분	다음연도 이 월 액 ㉔	집행잔액㉔=㉔-㉔-㉔			
		계	보조금 반납금	예산절감 등	비율 (㉔/㉔)
합 계	46,980,395,120	76,996,468,380	25,275,372,405	51,721,095,975	8.8
일 반 공 공 행 정	2,497,507,280	6,213,649,360	2,656,771,913	3,556,877,447	7.9
공공질서및안전	17,918,080	586,712,720	21,896,563	564,816,157	16.4
교 육	0	612,593,840	15,197,720	597,396,120	3.6
문 화 및 관 광	778,685,000	2,214,310,190	72,673,356	2,141,636,834	4.3
환 경	3,756,799,670	2,031,011,850	124,849,819	1,906,162,031	5.1
사 회 복 지	1,001,070,970	32,489,693,630	16,635,416,130	15,854,277,500	8.4
보 건	1,684,200,000	3,886,089,530	2,049,293,526	1,836,796,004	11.6
농 립 해 양 수 산	400,000,000	249,586,220	31,213,170	218,373,050	14.9
산업·중소기업 및 예 너 지	5,467,650,000	3,753,508,480	3,119,923,633	633,584,847	8.7
교 통 및 물 류	19,554,617,510	443,659,850	20,080	443,639,770	1.2
국토 및 지역개발	11,821,946,610	908,670,040	242,255,432	666,414,608	2.4
예 비 비	0	11,653,216,000	0	11,653,216,000	100
기 타	0	11,953,766,670	305,861,063	11,647,905,607	8.7

다.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연도 이 월 액 ㉢	집행잔액㉣=㉠-㉡-㉢			
				계	보조금 반납금	예산절감 등	비율 (㉣/㉠)
합 계	21,778,036,500	18,493,679,880	0	3,284,356,620	50,389,235	3,233,967,385	15.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18,610,000	587,516,740	0	31,093,260	24,047,865	7,045,395	5.0
주차장 특별회계	21,159,426,500	17,906,163,140	0	3,253,263,360	26,341,370	3,226,921,990	15.4

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집행잔액	원 인 별 내 역						
		보조금 반납금	보 조 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잔액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80,280,825,000	25,325,761,640	7,859,136,881	9,996,000	1,072,224,780	528,821,110	33,731,668,589	11,753,216,000
일반회계	76,996,468,380	25,275,372,405	6,876,457,956	9,996,000	1,072,224,780	420,438,900	31,688,762,339	11,653,216,000
특별회계	3,284,356,620	50,389,235	982,678,925	0	0	108,382,210	2,042,906,250	100,000,000

-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80,280,825천 원으로
세출 예산현액 899,754,991천 원에 대한 집행잔액 비율은 8.9%입니다.
- 일반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8.8%, 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15.1%입니다.
- 특별회계 집행잔액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5.0%,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잔액 비율은 15.4%입니다.

4.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

2022회계연도에서 발생한 다음연도 이월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 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㉕				비율 (㉕/㉔)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899,754,990,770	46,980,395,120	22,007,557,000	24,972,838,120	0	5.2
일반회계	877,976,954,270	46,980,395,120	22,007,557,000	24,972,838,120	0	5.4
특별회계	21,778,036,500	0	0	0	0	0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46,980,395천 원으로
예산현액 899,754,991천 원에 대한 이월 비율은 5.2%입니다.
- 명시이월 22,007,557천 원, 사고이월 24,972,838천 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 일반회계 이월사업 현황은 명시이월 33건 22,007,557천 원과
사고이월 47건 24,972,838천 원으로, 총 80건 46,980,395천 원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5. 예비비의 결산

가. 일반회계

(단위: 원)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	㉡	㉢	(㉠-㉡-㉢)
합 계		21,504,143,000	20,587,072,320	27,200,000	889,870,680
총 무 과	구 청 사 유 지 관 리	21,377,000	21,377,000	0	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대응	79,599,000	79,599,000	0	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대응	264,000,000	264,000,000	0	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대응	350,001,000	325,211,700	0	24,789,30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대응	110,493,000	99,072,800	0	11,420,20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대응	862,500,000	862,500,000	0	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대응	242,000,000	242,000,000	0	0
총 무 과	코로나19 확산방지 긴급 대응	18,350,000	18,350,000	0	0
자 치 행 정 과	지 방 선 거 관 리	149,308,000	149,308,000	0	0
자 치 행 정 과	임사선별진료소 구축 및 운영지원	120,900,000	120,900,000	0	0
교 육 지 원 과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3,500,000	3,500,000	0	0
교 육 지 원 과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00,000	2,000,000	0	0
교 육 지 원 과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2,000,000	2,000,000	0	0
교 육 지 원 과	코로나19 대응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3,000,000	2,000,000	0	1,000,000
교 육 지 원 과	코로나19 대응 유치원 방역 지원 금 지원	28,000,000	26,000,000	0	2,000,000
교 육 지 원 과	유초 기 운내는 급간식꾸 러 미 지 원	7,600,000	7,6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구 립 체 육 시 설 운 영	22,825,000	22,825,000	0	0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	㉡	㉢	(㉠-㉡-㉢)
문 화 체 육 과	구 립 체 육 시 설 운 영	1,286,000	1,286,000	0	0
문 화 체 육 과	구 립 체 육 시 설 운 영	487,000	377,180	0	109,82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민 생 경 제 지 원	98,000,000	93,020,370	0	4,979,63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500,000	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500,000	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500,000	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500,000	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1,500,000	1,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3,000,000	3,0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2,000,000	2,0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1,500,000	1,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1,000,000	1,0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500,000	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5,500,000	5,5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코로나19 대 응 집 합 금 지 영 업 제한 업 종 폐 업 소 상 공 인 지 원	1,500,000	500,000	0	1,000,000
문 화 체 육 과	공 공 체 육 시 설 개 보 수 지 원	120,000,000	120,000,000	0	0
문 화 체 육 과	공 공 체 육 시 설 개 보 수 지 원	300,000,000	300,000,000	0	0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100,000,000	100,000,000	0	0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50,000,000	50,000,000	0	0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50,000,000	50,000,000	0	0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	㉡	㉢	(㉠-㉡-㉢)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50,000,000	50,000,000	0	0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150,000,000	150,000,000	0	0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100,000,000	100,000,000	0	0
재 무 과	공 공 용 지 관 리	84,760,000	84,760,000	0	0
지 역 경 제 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 행 (보 조)	892,500,000	892,500,000	0	0
지 역 경 제 과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 행 (보 조)	868,171,000	868,171,000	0	0
지 역 경 제 과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육성	3,000,000,000	3,000,000,000	0	0
지 역 경 제 과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500,000	500,000	0	0
지 역 경 제 과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500,000	500,000	0	0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270,444,000	270,433,120	0	10,88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550,000,000	550,000,000	0	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750,000,000	747,880,000	0	2,120,000
복 지 정 책 과	사회재난 피해자 생활안정 지 원 (보 조) (70:12:18)	14,400,000	14,400,000	0	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14,912,000	14,912,000	0	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4,617,000	4,287,380	0	329,62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1,000,000	1,000,000	0	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20,700,000	12,513,000	0	8,187,00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750,000,000	750,000,000	0	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200,000,000	200,000,000	0	0
복 지 정 책 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550,000,000	550,000,000	0	0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	㉡	㉢	(㉠-㉡-㉢)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900,000,000	900,000,000	0	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540,000,000	537,600,000	0	2,400,00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810,000,000	810,000,000	0	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600,000,000	600,000,000	0	0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물 품 지 원 사 업 (보 조)	600,000,000	600,000,000	0	0
기초복지과	저소득층 감염예방지원	220,000,000	178,697,800	0	41,302,200
어르신장애인 복 지 과	노 인 활 동 지 원	2,334,850,000	2,225,250,000	0	109,600,000
어르신장애인 복 지 과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	17,000,000	17,000,000	0	0
어르신장애인복 지 과	코로나 19 장애인 감염예방 지원	250,050,000	236,586,400	0	13,463,6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조) (0:50:50)(0:70:30)(0:100:0)	162,000,000	141,900,000	0	20,100,0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보 조) (0 : 5 0 : 5 0)	1,400,000	1,391,500	0	8,500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 (보 조) (0 : 5 0 : 5 0)	259,000,000	258,700,000	0	300,000
여성가족과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운 영 비 지 원	162,000,000	162,000,000	0	0
아동청년과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 영 (보 조)	69,607,000	42,515,790	0	27,091,210
아동청년과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 영 (보 조)	22,220,000	14,601,940	0	7,618,060
아동청년과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 영 (보 조)	1,323,000	949,200	0	373,800
아동청년과	온종일 돌봄시설 확충 및 운 영 (보 조)	4,700,000	4,429,330	0	270,670
아동청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3,000,000	13,000,000	0	0
아동청년과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보조)	2,000,000	490,000	0	1,510,000
아동청년과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보조)	420,000,000	420,000,000	0	0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	㉡	㉢	(㉠-㉡-㉢)
아 동 청 년 과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보조)	181,500,000	181,500,000	0	0
아 동 청 년 과	청년 사회활동 프로젝트(보조)	2,000,000	500,000	0	1,500,000
청 소 행 정 과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32,000,000	12,112,320	0	19,887,680
청 소 행 정 과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60,000,000	1,375,000	0	58,625,000
청 소 행 정 과	폐기물 재활용 자원순환모델 구축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8,000,000	7,822,400	0	177,600
도 시 계 획 과	서 울 숲 일 대 중 합 발 전 방 안 수 립 용 역	100,000,000	100,000,000	0	0
주 거 정 비 과	주택생태(재건축 재개발 등) 추진(보조)	68,000,000	40,800,000	27,200,000	0
안 전 관 리 과	재 난 예 방 관 리	236,120,000	5,182,510	0	230,937,490
안 전 관 리 과	재 난 예 방 관 리	108,000,000	53,250,000	0	54,750,000
교 통 행 정 과	마 을 버 스 운 영 관 리	70,000,000	70,000,000	0	0
교 통 행 정 과	택 시 운 수 종 사 자 지 원	458,000,000	455,600,000	0	2,400,000
교 통 행 정 과	택 시 운 수 종 사 자 지 원	374,400,000	215,200,000	0	159,200,000
교 통 행 정 과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자 지원	326,800,000	326,800,000	0	0
교 통 행 정 과	용달개별화물운송사업자 지원	15,200,000	15,200,000	0	0
토 목 과	금 호 로 3 길 도 로 확 장	160,000,000	134,406,000	0	25,594,000
맑 은 환 경 과	미 세 먼 지 대 책 추 진	28,910,000	26,100,700	0	2,809,300
보 건 위 생 과	청 사 관 리 및 운 영	34,020,000	27,750,000	0	6,270,000
보 건 위 생 과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	25,000,000	25,000,000	0	0
보 건 위 생 과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	25,000,000	25,000,000	0	0
보 건 위 생 과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	50,000,000	50,000,000	0	0

과 목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조 직	세 부 사 업	㉠	㉡	㉢	(㉠-㉡-㉢)
보 건 위 생 과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	40,000,000	40,000,000	0	0
보 건 위 생 과	코로나19 관련 폐업 소상공인 지원	1,000,000	1,000,000	0	0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5,000,000	5,000,000	0	0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5,000,000	5,000,000	0	0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업 소 지 도 점 검	10,000,000	4,000,000	0	6,000,000
건 강 관 리 과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19,500,000	19,500,000	0	0
건 강 관 리 과	성동아이맘건강센터 운영	55,500,000	55,500,000	0	0
보 건 의 료 과	코로나감염증환자 재택치료 운영(보조)	58,000,000	57,320,000	0	680,000
보 건 의 료 과	코로나감염증환자 재택치료 지원	11,800,000	11,800,000	0	0
보 건 의 료 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물 품 키 트 지 원	52,800,000	11,744,880	0	41,055,120
질 병 예 방 과	방 역 소 독	33,000,000	33,000,000	0	0
질 병 예 방 과	방 역 소 독	55,000,000	55,000,000	0	0
질 병 예 방 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 산 방 지 지 원	97,613,000	97,613,000	0	0
질 병 예 방 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확 산 방 지 지 원	9,600,000	9,600,000	0	0

- 일반회계 예비비는 21,504,143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587,072천원을 지출하고 27,200천 원을 이월하여
889,87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특별회계

-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6. 기금의 결산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조성액 (㉠+㉡-㉢)
		계	조성액㉡	사용액㉢	
계	33,978,554,604	4,587,115,098	23,499,057,708	18,911,942,610	38,565,669,702
남북교류협력기금	200,600,330	178,209,080	204,329,080	26,120,000	378,809,410
공 용 및 공 공 용 의 청 사 기 금	9,557,193,253	1,083,192,336	4,576,905,896	3,493,713,560	10,640,385,589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 합 계 정)	4,335,588,036	△229,708,896	109,876,414	339,585,310	4,105,879,1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0	4,063,696,504	4,063,696,504	0	4,063,696,504
중소기업육성기금	6,314,934,522	△126,018,085	9,065,690,405	9,191,708,490	6,188,916,437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234,429,743	355,939,412	515,134,882	159,195,470	590,369,155
자 활 기 금	2,101,089,078	57,107,149	105,107,149	48,000,000	2,158,196,227
노 인 복 지 기 금	494,783,373	△9,885,258	10,424,742	20,310,000	484,898,115
양 성 평 등 기 금	311,145,572	△1,179,920	4,310,080	5,490,000	309,965,652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815,263,545	34,003,509	34,283,509	280,000	849,267,054
옥외광고발전기금	1,301,253,262	△330,064,290	204,014,070	534,078,360	971,188,972
재 난 관 리 기 금	5,315,082,530	△460,905,538	3,163,351,642	3,624,257,180	4,854,176,992
도로굴착복구기금	2,707,355,960	△59,642,240	1,364,136,350	1,423,778,590	2,647,713,720
식 품 진 흥 기 금	289,835,400	32,371,335	77,796,985	45,425,650	322,206,735

- 2022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33,978,555천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23,499,058천 원을 더하고
 사용액 18,911,943천 원을 공제한 38,565,670천 원입니다.

7. 재무제표의 결산

가. 재정상태

2022회계연도 성동구의 재정상태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1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유동자산	245,140	11.26%	210,948	9.99%
투자자산	20,299	0.93%	18,113	0.86%
일반유형자산	363,001	16.68%	357,402	16.92%
주민편의시설	506,223	23.26%	488,848	23.14%
사회기반시설	1,035,129	47.56%	1,031,484	48.83%
기타비유동자산	6,540	0.31%	5,729	0.26%
자산 총계	2,176,332	100.00%	2,112,524	100.00%
유동부채	23,755	62.23%	19,789	58.90%
장기차입부채	-	0.00%	-	0.00%
기타비유동부채	14,418	37.77%	13,808	41.10%
부채 총계	38,173	100.00%	33,597	100.00%
고정순자산	1,909,792	89.32%	1,879,410	90.40%
특정순자산	56,377	2.64%	48,351	2.33%
일반순자산	171,990	8.04%	151,166	7.27%
순자산 총계	2,138,159	100.00%	2,078,927	100.00%
부채 및 순자산 총계	2,176,332	-	2,112,524	-

-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자산은 2,176,332백만 원, 부채가 38,173백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2,138,159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59,232백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자산이 63,808백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유동자산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유동자산의 총액은 245,140백만 원이고 작년에 비해 34,19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품과 단기대여금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나. 재정운영결과

2022회계연도 성동구의 재정운영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1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넷비용	계	총원가	사업수익	순원가	넷비용	계
I. 사업순원가	575,871	333,948	241,923	-	241,923	544,015	368,391	175,624	-	175,624
II. 관리운영비	-	-	151,484	(16,998)	134,486	-	-	148,404	(15,393)	133,011
III. 비배분비용	-	-	28,511	(39)	28,472	-	-	19,794	(351)	19,443
IV. 비배분수익	-	-	39,969	(39)	39,930	-	-	18,196	(351)	17,845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VI)	-	-	381,949	(16,998)	364,951	-	-	325,626	(15,393)	310,233
VI. 수익	-	-	426,267	(16,998)	409,269	-	-	359,421	(15,393)	344,028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	-	(44,318)	-	(44,318)	-	-	(33,795)	-	(33,795)

- 2022회계연도 성동구의 사업순원가는 241,923백만 원이고
관리운영비 134,486백만 원,
비배분비용 28,472백만 원 및 비배분수익 39,930백만 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364,951백만 원입니다.
-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수익 409,269백만 원을 차감한
2022회계연도 성동구의 재정운영결과는 △44,318백만 원입니다.

8. 성과보고서

성동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건)

실 국 명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달성여부		
		개수	지표수㉔	초과달성, 달성 수㉕	미달성 수	달성률(%) (㉕/㉔)
계	10	69	175	164	11	93.7
감 사 담 당 관	1	1	3	3	0	100.0
소 통 담 당 관	1	1	3	3	0	100.0
행 정 관 리 국	1	15	32	31	1	96.9
기 획 재 정 국	1	10	29	28	1	96.6
복 지 국	1	14	36	32	4	88.9
도 시 관 리 국	1	7	18	18	0	100.0
안전건설교통국	1	7	19	19	0	100.0
스마트포용도시국	1	8	20	20	0	100.0
보 건 소	1	5	13	8	5	61.5
구 의 회	1	1	2	2	0	100.0

-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9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75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총 성과지표 175개 중에 초과달성 및 달성이 164개로
전체 성과지표 달성률은 93.7%를 보이고 있습니다.

9. 재산의 결산

가. 물 품

2022회계연도 물품의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원)

구 분		2021년도말 보유현황 ㉔	2022년도 증감현황						2022년도말 보유현황 (㉔+㉕-㉖)
			취득㉕			처분㉖			
			구 매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매 각	관리전환 양여기타	소 계	
합계	수량	1,621	50	0	50	50	0	50	1,621
	금액	12,136,013,001	461,947,515	0	461,947,515	390,150,528	0	390,150,528	12,207,809,988

- 2022년도말 물품 보유현황은 1,621개 12,207,810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량은 동일하며 금액은 71,797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나. 공유재산

2022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㉔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㉔+㉕-㉖)
			증가㉕	감소㉖	
합 계		1,772,690,809,825	115,036,010,157	57,589,615,757	1,830,137,204,225
행정 재산	계	1,705,897,667,331	106,408,773,787	15,100,281,310	1,797,206,159,808
	공 용 재 산	515,677,411,880	43,823,178,507	1,234,712,600	558,265,877,787
	공공용재산	1,185,237,117,151	62,585,595,280	13,799,008,710	1,234,023,703,721
	기업용재산	4,983,138,300	0	66,560,000	4,916,578,300
일 반 재 산		66,793,142,494	7,980,225,770	42,489,334,447	32,284,033,817
건설중인자산		0	647,010,600	0	647,010,600

-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 지	1,190,445㎡	1,203,420,599,978원
건 물	209,348㎡	375,962,211,260원
기 타	31,499건	250,754,392,987원
총 계		1,830,137,204,225원

10. 세입세출외 현금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㉑	2022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㉑+㉒-㉓)
		계	증가㉒	감소㉓	
합 계	3,450,136,765	△ 1,149,913,807	17,570,733,316	18,720,647,123	2,300,222,958
보 증 금	29,423,389	0	100,000,000	100,000,000	29,423,389
보 관 금	3,298,473,258	△ 1,149,913,807	14,776,884,416	15,926,798,223	2,148,559,451
잡종금기타	122,240,118	0	2,693,848,900	2,693,848,900	122,240,118

- 2022년도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2,300,223천 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3,450,137천 원보다 1,149,914천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 금고의 결산

2022회계연도 금고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세입결산액 ㉑	세출결산액 ㉒	잔 액 (금고보관액) (㉑-㉒)	비고
합 계		937,330,029,224	772,493,770,650	164,836,258,574	
일 반 회 계		914,307,658,324	754,000,090,770	160,307,567,554	
기 타 특 별 회 계		23,022,370,900	18,493,679,880	4,528,691,0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6,489,010	587,516,740	58,972,270	
	주차장특별회계	22,375,881,890	17,906,163,140	4,469,718,750	

- 서울특별시 성동구금고 (주)신한은행 성동구청지점 발행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되었습니다.

IV. 개선 및 권고사항

1. 세입·세출 분야

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1) 현황 및 문제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연도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세입액	세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순세계 잉여금
2022년도	937,330	772,494	46,980	20,178	97,678 (일반회계 93,200 특별회계 4,478)
2021년도	890,178	756,014	61,077	11,417	61,670
2020년도	894,197	747,371	55,555	10,911	80,360
2019년도	673,452	549,666	42,903	7,722	73,162
2018년도	557,891	471,020	29,892	5,105	51,874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3,200백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초과세입	지출잔액 (이월액 등 포함)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2022년도	36,331	123,977	(46,980)	(20,128)	93,200

2) 감사의견

성동구의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2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은 전기 대비 36,008백만 원이 증가하여 전기 대비 5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 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과 보조금 반납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매 회계연도에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발생 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비율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있는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재정 예산 및 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예측성을 암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세입, 세출의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 일반회계 집행잔액 과다발생 방지

1) 현황 및 문제점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집행 비율 (나)/(가)	이월액 (다)	이월 비율 (다)/(가)	잔액 (가)-(나)-(다)
2022년도	877,976	754,000	85.8%	46,980	5.4%	76,996
2021년도	834,995	720,357	86.3%	56,260	6.7%	58,378
2020년도	813,671	725,348	89.1%	36,427	4.5%	51,895
2019년도	602,722	535,122	88.8%	35,484	5.9%	32,116

2022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76,996백만 원으로 이는 2021년 대비 18,618백만 원정도 증가한 금액입니다(증가율 31.9%). 예산에서 사용 또는 이월되지 못한 집행잔액은 반납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예산에서 집행되는 비율은 2020년 이후 매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2) 감사의견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의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 변경 및 승인 처리 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의 수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부서에서는 예산삭감조치 및 이월예산으로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 이월액 승인 절차 개선

1) 현황 및 문제점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이월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예산현액 (가)	이월합계 (나)=(다)+(라)	명시 이월액 (다)	사고 이월액 (라)	비율 (나)/(가)
합계	899,755	46,980	22,007	24,973	5.2%
일반회계	877,977	46,980	22,007	24,973	5.4%
특별회계	21,778	-	-	-	0%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877,977백만 원 중 예산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은 24,585백만 원으로 예비비 11,653백만 원을 제외하면 12,932백만 원으로 이 중 12,859백만 원(99.4%)은 이월되었습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나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예외적으로 예산의 융통성 있는 집행을 위하여 세출 예산 중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을 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명시이월로서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은 동 법에 나열된 특수한 사유에 해당할 때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될 수 있습니다.

2) 감사의견

사고이월 사유를 검토 한 결과 법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어야 할 금액이 관행상 또는 업무 절차상의 이유로 사고이월 된 상황을 일부 발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은 사고이월을 행정 편의상 사용하는 경우 사고이월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할 것인 바, 부득이 해당연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 명확한 사업의 경우 명시이월을 하거나 「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 규정에 따라 계속비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라. 예비비 책정 및 사용의 적정성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과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연도	예비비예산 (가)	지출결정액 (나)	지출액 (다)	이월액 (라)	집행잔액 (나)-(다)-(라)	미집행 비율 $1-(나)/(가)$
2022	33,157	21,504	20,587	27	890	35.1%
2021	19,049	13,572	10,715	762	2,096	28.8%
2020	13,605	12,355	11,742	211	402	9.2%
2019	2,849	1,254	1,059	68	128	56.0%
2018	3,248	635	496	19	121	80.4%

2) 감사의견

일반회계 예비비의 예산현액은 33,157백만 원, 불용되어 미집행된 금액은 11,653백만 원(33,157백만 원 - 21,504백만 원)으로 예산액 기준 35.1%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작년 미집행 비율(28.8%)에 비해 21.8%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심의를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이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최대한 확정되어 있는 기정예산을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비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예비비가 과대 책정되지 않도록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코로나19와 같은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2022년 예비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27,561백만 원은 이와 같은 특수목적의 예비비입니다.

재해 및 재난 관련 예비비는 별도의 한도가 없으므로 방만하게 책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예비비 규모 및 사용의 적정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 보건소 소독대행용역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성동구는 생활치료센터 및 코로나19 확진자 이용공간에 대해 외부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독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분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용공간
1차	- 96,536천원 - 계약시작일 ~ 2022. 3. 31.	- 19,000천원 - 계약체결일 ~ 2022. 3. 31.
2차	- 187,318천원 - 계약시작일 ~ 2022. 6. 30.	- 19,000천원 - 계약체결일 ~ 2022. 6. 30.
계약 내용	- 성동구 생활치료센터 시설 방역 소독 및 청소 실시 - 객실 및 이동동선, 폐기물 보관장소 등 - 의료진 및 센터 근무직원 사용공간 등	- 성동구 내 코로나19 확진자 이용 공간(구역)에 대한 방역소독 실시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징구한 원가 산출내역서를 확인해 보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등 인건비에서 필수적으로 파생되는 보험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시 이에 대해 별도의 수정 및 보완 요청이 없었습니다.

2) 감사의견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국민연금법」 제88조(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장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는 정해진 요율에

따라 용역의 예정가격에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 조치해야 합니다. 예정원가 및 확정원가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서 사후 정산의무를 규정한 비목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시부터 계약상대방에게 사후 정산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설명해주고, 정확한 비목별 정산 서류를 징구하고 누락 없이 정산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기금 분야

가. 성동형 공공배달앱 사업 관련 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2022년 중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배달의 증가 및 민간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심화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성동형 공공배달앱(이하 “배달앱”)을 도입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에서 675백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83.6백만 원을 지출한 후 남은 미사용액 589백만 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단위: 원)

회계	계정과목	예산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재난관리기금	공기관에 대한 정상적 위탁사업비(308-11)	675,000,000	83,672,150	589,327,850

2) 감사의견

예산 계정과목 처리 측면에서 배달앱 계약상대방인 ****회사는 성동구 입장에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상대방인 ****회사를 공공기관으로 판단하여 “공기관에 대한 정상적위탁사업비(308-11)”로 계정처리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참고하셔서 적합한 계정으로 대체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출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이 성질별 분류에 맞게 집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에 의하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예산실무 이론서에서는 당초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당해연도 이행가능한 사업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연도말에 사고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을 과다 예측하여 2022년 회계연도 중 저조한 집행율을 기록하고 나머지 예산을 이월한 것은 사고이월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향후에는 사업대상자, 사업기간, 사업비 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조기 발주 등을 통해 당해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입 예산 산출근거에 포함된 소비자 프로모션 이벤트(3억원) 및 플랫폼 런칭 이벤트(1.5억원)에 대한 금액이 전체 세입예산 규모(6.75억) 중 67%(2/3)를 차지하는 바, 당초 사업 취지에 비추어 지나치게 큰 금액이 프로모션 비용으로 책정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구내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한 것이 당초 취지이므로, 이에 당초 목적에 맞는 예산 수립이 필요합니다.

3. 재무제표 분야

가. 퇴직급여충당부채 외부 적립에 관한 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2022년도말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공무원을 제외한 기간제, 공무원직 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추계액 및 퇴직급여충당부채 외부 적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총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설정대상인원수(명)	181	179	2
당기 퇴직금추계액(㉮)	14,176,700	14,089,724	86,976
퇴직금전환금및예치금(㉬)	954,767	888,691	66,076
퇴직금예치금 외부 적립비율(㉬/㉮)	6.7%	6.3%	76.0%

2) 감사의견

2022년도말 현재 기간제, 공무원직 근로자 등에 대한 퇴직금추계액은 14,176,700천 원이고 이를 위하여 외부에 예치한 퇴직금전환금 및 예치금은 954,767천 원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외부 예치금 적립비율은 6.7%입니다.

외부 예치금적립비율은 전년도 4.1%에 비하여 2.6%포인트 증가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외부 적립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은 근로자 수급권 보장은 물론, 퇴직금에 대한 비용이 적시에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퇴직금 대상 직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관련 업무 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책임자산 등에 대한 실재성(實在性) 여부를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토지, 미술품 등과 관련하여 실재성이 없음에도 공유재산이나 관리책임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 일부 발견되었습니다.

구분		문제점
공유재산	토지 중 전(田)	18개 필지 중 전(田)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필지는 없음
	특허권 (特許權)	직무발명보상금 등 지급된 특허권을 공유재산(무체 재산권) 미등록
관리책임 자산 ¹⁾	기증조각품	기증 조각품이 2014년에 파손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책임자산 명세에 실재하는 것으로 포함되어 있음

2) 감사의견

주기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실사를 통해 실재성(實在性)이 없는 공유재산 및 물품은 보유재산 명세에서 삭제하여 실제 재산과 장부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의 경우 사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외부인의 무단점유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고,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토지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청의 정당한 재산권이 사유화로 인해 잠식(蠶食)당거나 침해(侵害)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1) 관리책임자산이란 유산자산, 자연자원 등과 같이 합리적인 가치측정이 어렵고 보존을 위한 비용만 발생하며,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산이나 회계실체가 반드시 책임 있게 관리할 책무가 있는 자산을 말함. 관리책임자산은 자산의 정의에는 부합되지만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고 문화유산을 대량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간의 형평성 및 산출된 정보의 왜곡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관리책임자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자산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재정상태보고서상의 자산에서 제외하되 필수보충정보로 표시하도록 함(출처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은 등록업무는 현업부서에서 하더라도, 이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필요합니다.

구민에 의한 기증품 역시 구청의 재산권으로서 매입한 공유재산 및 물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제정 취지²⁾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개발원리금 상환 관련

1) 현황 및 문제점

기존 왕십리제2동 주민센터는 1977년 준공된 성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2017년 7월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9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한 후, 2019년 5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위탁개발 사업을 확정하였습니다.

신청사는 기존 주민센터 인접 부지에, 대지면적 771㎡, 연면적 1616㎡,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로 1년 3개월의 공사 끝에 2022. 3월에 건립되었으며, 동 주민센터를 비롯, 작은도서관, 드림스타트센터, 헬스장, 주민자치회 사무실, 공유주방, 다목적실 등 복합문화공간과 주민자치 활성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96억원의 사업비 소요되었으며(시비, 구비 및 KAMCO 사업비 합계) 2023. 3월 기준 미상환금은 384,375천 원(미확정)이며, 장기미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 감사의견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에서는 수탁기관(KAMCO)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는 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성동구)이 매년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의 경우에도 구조는 동일합니다. 위탁기관인 성동구가 매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는 측면에서, 본 건 왕십리제2동 공공복합청사 개발 원리금 중 미상환 잔액은 구에서 상환의무가 있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상환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유재산 위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유재산 위탁 개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동구의 입장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아울러 수탁 기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³⁾.

따라서 향후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사업계획단계 및 조기상환 등의 의사결정 등에 재무전문가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보고 신중히 의사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공유재산 위탁개발의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01.

라. 미수과태료 누적액 및 정리보류채권 회수 등 감독 강화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2022. 12. 31. 현재 성동구청의 미수(未收)세외수입 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내부거래	계
미수재산임대료수익	8,626,136,110	-	-	-	8,626,136,110
미수사용료수익	500,968,520	-	-	-	500,968,520
미수수수수료수익	433,494,330	-	-	-	433,494,330
미수공유재산매각 대금	3,265,750	-	-	-	3,265,750
미수부담금	107,021,020	-	-	-	107,021,020
미수변상금	751,968,040	-	-	-	751,968,040
미수위약금	-	20,837,050	-	-	20,837,050
미수과태료	11,288,953,680	9,250,688,080	329,612,020	-	20,869,253,780
미수과징금	2,101,522,550	-	-	-	2,101,522,550
미수국·시·도유재산 매각수수료수익	659,270	-	-	-	659,270
미수이자수익	1,105,870	-	-	-	1,105,870
미수이행강제금	2,410,835,120	-	-	-	2,410,835,120
미수기타임시세외수익	564,525,580	-	-	-	564,525,580
계	26,790,455,840	9,271,525,130	329,612,020	-	36,391,592,990

2022. 12. 31. 현재 성동구청의 미수(未收)과태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체적 과태료의 종류	금액(원)	소관부서
일반회계 합계		11,288,953,680	-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77,902,550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건축법 위반과태료	1,408,000	건축과
일반회계	건축사법 위반과태료	2,500,000	
일반회계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0,000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	178,865,280	공동주택과
일반회계	자동차운수사업관련법(운전자) 위반과태료	101,734,210	교통지도과
일반회계	편의증진보장 관련 위반과태료	194,035,220	
일반회계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1,781,94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운행제한) 위반과태료	650,000	
일반회계	기타 과태료	550,00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이전등록) 위반과태료	2,865,600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임시운행) 위반과태료	11,540,98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32,184,170	
일반회계	건설기계보험 과태료	225,972,980	
일반회계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21,246,55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주소변경) 위반과태료	67,872,620	
일반회계	이륜차관리법 위반과태료	80,576,620	
일반회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과태료	93,911,670	
일반회계	이륜차의무보험 과태료	209,376,63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말소등록) 위반과태료	55,568,160	
일반회계	자동차의무보험 위반과태료	6,259,050,01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검사) 위반과태료	2,342,515,630	
일반회계	자동차관리법(정기점검지연) 위반과태료	15,566,600	
일반회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540,000	
일반회계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380,999,270	
일반회계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검사 과태료	177,059,040	
일반회계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5,484,500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2,328,770	맑은환경과
일반회계	소음진동관리법 위반과태료	3,132,000	
일반회계	전기공사업법 위반과태료	1,726,000	
일반회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1,311,320	
일반회계	석면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과태료	500,000	
일반회계	물환경보전법 위반과태료	2,980,000	
일반회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과태료	2,663,600	

구분	구체적 과태료의 종류	금액(원)	소관부서
일반회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00,000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과태료	999,600	
일반회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63,080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2,730,000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950,100	
일반회계	건강기능식품 관련 위반과태료	1,880,800	
일반회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2,002,600	
일반회계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5,841,310	
일반회계	약사법 위반과태료	1,630,000	보건의료과
일반회계	의료법 위반과태료	885,000	
일반회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	18,500,000	아동청년과
일반회계	건설산업법 위반과태료	2,462,500	안전관리과
일반회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110,500	
일반회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13,164,700	
일반회계	도로법 위반과태료	78,660,220	
일반회계	노인장기요양 관련 위반과태료	593,000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편의증진 관련 위반과태료	8,757,500	
일반회계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반과태료	21,060,000	
일반회계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	1,392,360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주택법 위반과태료	14,858,840	주거정비과
일반회계	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445,600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4,738,800	
일반회계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위반과태료	73,100	
일반회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358,200	
일반회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11,782,000	
일반회계	동물보호법 위반과태료	1,106,200	
일반회계	정화조 과태료	6,709,400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17,700,000	
일반회계	폐기물 관리법(무단투기과태료) 위반과태료	60,708,730	
일반회계	1회용품사용 위반과태료	119,250	
일반회계	지하수법 위반과태료	2,204,000	치수과
일반회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과태료	44,706,860	토지관리과
일반회계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과태료	326,389,010	
일반회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과태료	620,500	
주차장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과태료	9,250,688,080	교통지도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329,612,020	도시계획과

2022. 12. 31. 현재 성동구청의 미수세금 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 분		채권금액(A)	대손설정률(%)	대손충당금(B)	장부가액(A-B)
보통세	미수등록면허세	135,332,240	17.07	23,099,860	112,232,380
	미수재산세	852,668,880	6.29	53,658,452	799,010,428
	소계	988,001,120	7.77	76,758,312	911,242,808
계		988,001,120	7.77	76,758,312	911,242,808

2023. 3. 31. 현재 성동구의 정리보류 채권 총액(장부에서 제각되어 장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구의 징수권이 여전히 살아 있는 채권)은 12,054건, 2,520백만원입니다. 한편 최근 5개년 동안 정리보류⁴⁾ 채권에 대한 사후 회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건 수	2	8	17	9	18
금액(천원)	15	860	8,122	953	3,695

2) 감사의견

미수세외수입 채권 중 미수과태료 총액은 2백억원을 초과하고 있어 구의 전체 세입 규모(징수결정액 기준 9,764억) 대비 적은 규모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수과태료는 과태료 비목별, 세부원인별로 현재보다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액의 과태료가 누적되어 있는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는 특히 각별한 회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함

고의 및 장기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법을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시민과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한 시민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게 되므로 보다 철저한 회수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리 보류된 세금 채권에 대해서 현재 계속적으로 금융재산 조회 및 예금 압류 강화, 체납자의 전세보증금 유무 조회, 출국금지요청(요건 충족시)⁵⁾, 명단공개(요건 충족시) 등 시행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채권 확보 노력을 통해 징수율을 높여야 합니다.

5)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성과보고서 분야

가. 성과보고서 업무 프로세스 보완

1) 현황 및 문제점

① 2022년도 성과보고서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전략 목표	성과목표					결산액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자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22	10	69	175	40	124	11	772,494	756,027	16,467
2021	10	69	184	33	125	26	756,027	747,371	8,656
2020	10	69	191	33	124	34	747,371	549,666	197,705

성과계획 및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성동구는 “더불어 행복한 스마트 포용도시 성동”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전략목표 10개, 정책목표 69개, 성과지표 175개를 설정하고, 목표치 설정 후 연말 실적을 측정한 결과 초과달성 40개, 달성 124개, 미달성 11개로 나타났으며 소요사업비는 772,494백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② 문제점

표면상 2021년과 2022년과 비교하여 초과달성 및 달성한 성과지표 비중은 증가하였고, 미달성한 성과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은 전반적으로 성과지표 목표치가 현실성 없이 하향 설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2) 감사의견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서는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과거 추세치(전전년도 및 전년도 실적, 금년도 달성 추정치 등) 및 중장기 추진계획, 유사사업·전국 수준과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여 설정하되,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외부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2022년 성과보고서의 전반적인 비율분석 후 원인을 분석하여 지표 설정시 지나치게 낮게 목표를 잡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4년차이고, 최근에는 진정국면이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성과 지표 설정 및 달성에 영향을 받았다는 답변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코로나 19를 상수로 간주하여 성과보고서 관리체계를 강화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5. 출자·출연기관 보고서 분야

가. 벤처투자조합 피투자기업 중복수혜 방지 관련 업무 개선 필요

1) 현황 및 문제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한 성동임팩트 벤처투자조합, 성동ESG 임팩트 펀드에서 투자 받은 기업과 구의 다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중복 여부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견됩니다.

구분	내용	관련 투자조합
유형1	보조금을 받은 업체에 대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주식매수) 받은 경우(4건)	성 동 임 팩 트 벤처투자조합
유형2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설립된 펀드에서 투자(주식매수) 받은 업체가 성동구가 비용을 부담하는 무상 경영컨설팅용역까지 받는 경우(1건)	성 동 E S G 임팩트 펀드

2) 감사의견

상기와 같은 중복 지원은 특정 수혜기업에 대한 지나친 혜택 부여라고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과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추531 판결) 및 법제처 해석(법제처 2018. 12. 13. 회신, 의견18-0267)에 의하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지방재정이 열악한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주민 일반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방재정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 요건을 해석할 때에는 엄격하고 제한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